

영국의 통신·방송융합서비스 구분에 관한 연구

임 동 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dmyim@kisdi.re.kr

A study of telecommunication & broadcasting convergence service separation in U.K.

Yim Dong Min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KISDI)

영국은 지난 2003년 7월 17일 Communication Act 2003을 제정·발표하였다. 이 법에서 영국은 기존 서비스와 통신·방송융합서비스의 구분선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법령의 통신·방송융합서비스 관련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그 분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리·분석하였다. 이렇게 세부 법령을 분석하여 분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려 하는 이유는, 향후 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한 규제기관 및 법령의 조정 방향 등 거시적 차원의 문제들의 논의에 있어서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꼭 참조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I. 개 요

전세계적으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기술적 차원에서는 뉴미디어로 인한 다매체화, 압축 기술을 통한 다채널화, 디지털 기술에 의한 매체간의 융합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산업적 차원에서는 정보산업과 지식산업 그리고 오락산업간의 구분이 계속 불투명해지는 동시에 경쟁 및 전략적 제휴관계의 글로벌화가 지역에 관계없이 계속되고 있다. 융합은 이러한 기술진보에 바탕한 망·서비스·서비스제공자 차원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관련 정책마저도 포함되어 총체적으로 변화하고 있기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1986년 방송관련 규제기구의 단일화에 관한 제안이 제기된 이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조정과정을 거쳐 "A New Future for Communication"라는 백서를 2000년 12월에 발표하여 융합시대에 걸맞는 규제체계에 합의하였다. 이후 조정된 일정대로 진행하여 2002년 11월 새 커뮤니케이션법(안) (Communication Bill) 발표에 이어 2003년 7월 17일 6장 411조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 법(Communication Act 2003, UK)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와 병행되어 추진되어온 규제기관의 일원화를 2003년 12월 29일 Ofcom의 정식 출범으로 일단락 짓게 되었다.

구축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 법에서는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위한 사업자 허가 체제 등이 명시되었으며, 방송서비스에 일반적인 방송프로그램의 전송 이외에 여유 대역을 활용한 "디지털 부가서비스" 개념을 규정하여 양방향방송서비스 등의 제공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2. Communication Act 2003의 제정 과정

영국은 1986년 방송관련 규제기구의 단일화에 관한 제안이 제기된 이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조정과정을 거쳐 "A New Future for Communication"라는 백서를 2000년 12월에 발표하여 융합시대에 걸맞는 규제체계에 합의하였다. 이후 조정된 일정대로 진행하여 통신산업부(DTI)와 문화매체소프트부(DCMS)가 함께 2002년 11월 새 커뮤니케이션법(안) (Communication Bill)을 발표하고, 이어 2003년 7월 17일 커뮤니케이션 법(Communication Act 2003, UK)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Communication Act 2003은 DTI와 DCMS가 공동으로 최근 미디어서비스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기술 및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규제의 틀을 쇄신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통합규제기구 OFCOM 구성, 미디어산업의 각종 규제 단순화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융합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II. Communication Act 2003의 제정

1. 기존 법체계

영국은 통신법과 방송법이 분리된 이원적 법체계를 갖고 있다. 먼저 통신법의 경우, 1984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및 1949년 무선통신법(Wireless Telegraphy Act)이 기본 법령이다.

이에 비해 방송법은 1990년 이후 단일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996년에 방송법은 개정되었다.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법체계를

- 모든 전자통신망, 전자통신서비스, 관련설비에 대해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 적용(제2장)
- TV, 라디오, 콘텐츠의 규제는 제3장에서 별도로 다룸
 - 공영방송 규제(제1절)는 charter와 agreement에 근거히 Ofcom이 수행(제198조)
 - 독립방송 규제(제2절)는 Communication Act 2003이 근거 Ofcom이 수행(제211조)
 - 다양한 방송서비스 정의